

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3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11. .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그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촉진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근거 규정(안 제5조)
- 나.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
- 나. 「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18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및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나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- 다. 입법예고 사항 : 2013. 10. 7. ~ 2013. 10. 28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”를 “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”을 “제21조의2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1조의2제3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조제3호 중 “제30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0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제5호 중 “경리업무담당주사”를 “경리업무담당주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6호 중 “주차장특별회계업무담당주사”를 “주차장특별회계업무담당주무관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1조의2제6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노외주차장”을 “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차장법 <u>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</u>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세입) (생략) 1. 주차장법 <u>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</u> 재원 2. (생략) 3. 주차장법 <u>제30조의 규정에 의한</u> 과태료의 징수금 4. <u>기타</u> 수입</p> <p>제3조(세출)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<u>기타</u> 주차관련 사업</p> <p>제4조(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) (생략) 1. ~ 4. (생략) 5. 지 출 원 : <u>경리업무담당주사</u> 6. 수입금출납원 : <u>주차장특별회계업무담당주사</u></p> <p>제5조(보조 및 용자)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<u>노외주차장</u>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으며, 그 대상·방법 및 용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<u>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————— <u>제21조의2에 따라</u>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</p> <p>제2조(세입) (현행과 같음) 1. ————— <u>제21조의2제3항에 따른</u> ———— 2. (현행과 같음) 3. ————— <u>제30조에 따른</u> ———— ————— 4. <u>그 밖의</u> ————</p> <p>제3조(세출)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의</u> —————</p> <p>제4조(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)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지 출 원 : <u>경리업무담당주무관</u> 6. 수입금출납원 : <u>주차장특별회계업무담당주무관</u></p> <p>제5조(보조 및 용자)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————— <u>노외주차장과</u> <u>부설주차장</u>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</p>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1036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제출연월일 : 2013. 11. 12.(화)
-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13. 11. 15.(금)
- 위원회심사 : 2013. 11. 29.(금)

3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그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촉진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근거 규정(안 제5조)
-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4. 근거법령

- 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
- 「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18조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석기)

○ 본 조례안은

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그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

-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촉진을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근거 규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볼 것이고
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